

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 
1965년 12월 18일 발효

##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상업상의 민간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각서

### 일본측 서한

(역문)

1965년 6월 22일  
토오쿄오에서

각하,

본 대신은 일본국의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상업상의 민간 신용 제공에 관하여 양국정부의 대표자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.

1.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(\$ 300,000,000)의 액수를 초과하는 상업상의 기초에 의거한 통상의 민간 신용 제공이 일본국의 국민에 의하여 체결되는 적당한 계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행하여 질 것으로 기대되며, 이러한 신용 제공은 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용이하게 되고 또한 촉진된다.

2. 1의 제공에는 9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(\$ 90,000,000)의 액수에 달할 것이 기대되는 어업 협력을 위한 민간 신용 제공 및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(\$30,000,000)의 액수에 달할 것이 기대되는 선박 수출을 위한 민간 신용 제공이 포함되며, 이러한 신용 제공의 일본국 정부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배려되는 것으로 한다. 본 대신은 또한 본 서한 및 전기의 양해를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양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.

본 대신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.

일본국 외무대신

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

### 한국측 회한

1965년 6월 22일  
토오쿄오에서

각하,

본관은 금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.

“.....(일본측 서한).....”

본관은 또한 전기의 양해를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서한 및 본 회한을 양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.

본관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포함합니다.

외무부장관

일본국 외무대신  
시이나 에쓰사부로오  
외무성  
토오쿄오